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6. 9.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번호	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국민체육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2210786	박덕흠의원 등 10인	'25.6.12.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3.25.)
	2211363	조계원의원 등 16인	'25.7.9.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8.21.)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3.25.)
	2212952	진종오의원 등 11인	'25.9.12.	상정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5.11.17.)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3.25.)
	2214824	임오경의원 등 11인	'25.12.3.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2.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3.25.)
	2214876	김재원의원 등 11인	'25.12.4.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3.25.)
	2215454	박정하의원 등 10인	'25.12.19.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6.2.23.)
				소위 심사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2.24.)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26.3.25.)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27.)는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상 직장운동경기부의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 작성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에 의한 폭력,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해도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에 대한 표준계약서도 개발·보급하도록 하여 체육지도자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선수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재 국가대표 선수의 국제대회 출전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에 대한 지원 및 보호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파트너선수의 생활여건 등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려는 것임.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통보·보완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제재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체육 행사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의 설립을 법률에 규정하며, 안전계획 수립부터 교육, 점검, 사고 보고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써, 체육 행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파트너선수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가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조 및 제14조제7항).

나. 국가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및 체육지도자 사이의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다.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게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관서 및 소방관서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13조의2).

라.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을 설립함(안 제13조의4 및 제22조).

마. 체육 행사 안전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안 제13조의5).

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파트너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의3제1항 중 “선수”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수”를 “선수 및 체육지도자”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

정하는 경우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를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2항) 중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안전관리계획”으로, “관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의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의4 및 제1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수립의 자문 및 지원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
 4.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 및 구호지원
 6. 제13조의5에 따른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7.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③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선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 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스포츠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 ⑥ 안전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5(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이하 “체육행사안전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행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행사안전정보의 범위·내용,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육성”을 “육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 기관, 스포츠윤리센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체 및 안전재단의 운영·지원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육지도자와의 계약 체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스포츠안전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이 법 시행 후 1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③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은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④ 이 법에 따른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스포츠안전재단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4의2. (현행과 같음) <u>4의3. “파트너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가대표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u>
5. ~ 12. (생 략)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국가는 직장에 설치·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u>선수</u> 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여야 한다.	5. ~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작성 등) ① ----- ----- ----- ----- ----- <u>선수 및 체육지도자</u> ----- ----- ----- ----- -----.
②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은 직장운동경기부 <u>선수</u> 와 계약을 체결할	② ----- ----- ----- <u>선수 및 체육지도자</u> -----

경우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⑤ (생략)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

--. 이 경우 계약의 내용에는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선수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을 우대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선수 및 체육지도자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

전관리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교육·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신 설>

<신 설>

전관리조치) ① -----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고,

----- .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

<신 설>

청하거나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대한 역할 분담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 소방관서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도로를 사용하는 안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할 것
2. 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사항이 이행되었을 것
3.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예산이 확보되었을 것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점검 방식 등에

는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할 것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제6항에 따른 지역안전협의회(이하 “지역안전협의회”라 한다)가 구성·운영되고 있는 경우 지역안전협의회 구성·운영으로 제4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협의회 구성·운영을 갈음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시설·장소에서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로 인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질서유지 및 안전의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2제3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행사 중단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⑦ -----안전관리계획-----
-----필요한-----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

제13조의4(한국스포츠안전재단의 설립) ① 체육 행사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스포츠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체육 행사의 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계획 수립의 자문 및 지원
3. 체육 행사 안전관리 점검과 그 결과에 따른 자문 및 지원
4. 체육 행사 안전에 관한 국내외 교류와 협력
5. 체육 행사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의 배상 및 구호지원
6. 제13조의5에 따른 체육행사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원
7. 그 밖에 체육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안전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안전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안전재단
에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이
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선
임과 임기 등 안전재단의 운영
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
한다.

④ 안전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
스포츠안전재단 또는 이와 비
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 안전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감독한다.

⑥ 안전재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
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
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
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⑦ 안전재단에 관하여는 이 법
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5(체육행사안전정보시스

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 행사의 안전과 관련한 정
보(이하 “체육행사안전정보”라
한다)를 종합적으로 수집·관
리하기 위하여 체육행사안전정
보시스템(이하 “안전정보시스
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
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 행
사 개최 장소 또는 시설의 관
리자, 안전점검기관, 안전재단,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등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
는 등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
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행사안전정보의 범위·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 ③
(생략)
<신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국민
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 등을 위하여 사
용하고,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
계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사용한다.

1. ~ 9. (생략)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
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
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
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
터 및 체육인재육성 관련 단
체의 운영·지원

10의2. ~ 12. (생략)

내용, 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⑦ 국가는 국가대표선수의 훈
련을 돕는 파트너선수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① -----

-----.

1. ~ 9. (현행과 같음)

10.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
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
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생
활체육 관련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 스포츠윤리센
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체
육인재육성 관련 단체 및 안
전재단의 운영·지원

10의2. ~ 12. (현행과 같음)

